

부산광역시체육회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지원비 지급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육대회(동·하계)에 출전하는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지원을 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선수는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 라고 하며,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경기력향상육성비' 라고 한다.

제3조(자격기준)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로 한다.

1. 전국체육대회 및 해당종목의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이 가능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선수생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선수
3. 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

제4조(지급 구분 및 대상) 경기력향상육성비는 장학금과 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전국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하는 우수선수
2. 훈련보조금 :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 출전하는 우수선수(국군체육부대·의무경찰 소속 선수, 대학·일반부 통합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 선수)

제5조(대상자 선정)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선발한다. 단, 회원종목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선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경기력향상육성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기준을 초과 하는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며,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하여는 우수선수 일시금 또는 성과수당(옵션)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기간)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간 중이라도 중지할 수 있다.

1. 당 해 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
2. 당 해 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지 못한 선수
3.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불성실하거나 경기실적이 저조한 선수
4. 부산체육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선수

제8조(관리) 본회는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 훈련점검 및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도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우수선수 경기력향상 육성비 지급기준 (제6조 관련)

1. 장학금(고등부, 대학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 준	지급액/월
1등급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개인득점이 150점 이상인 선수 - 부산연고 선수 중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수 (별도심의)	500,000
2등급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은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300,000
3등급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은메달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년도 개인단체종목 중 전국체육대회 대학일반 통합종목에서 개인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	200,000
4등급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기타 기량이 우수하여 전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 -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증명서 첨부)	100,000

비고 : 고등학생은 4등급에 한하여 적용 단, 기량이 탁월한 우수선수는 2등급까지 적용

2. 훈련보조금(일반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 준	지급액/월
1등급	- 전년도 전국체전 300점이상 획득한 선수 중 본회가 특별히 인정이 되는 선수 -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 보전이 필요한 선수	2,100,000 ~ 5,000,000
2등급	-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개이상 또는 개인득점 2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보전이 필요한 선수	1,100,000 ~ 2,000,000
3등급	-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1개이상 또는 개인득점 100점이상을 획득한 선수 - 국가대표선수 중 전년도 체전에서 은, 동메달 획득 선수 -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보전이 필요한 선수	600,000 ~ 1,000,000
4등급	-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50점이상 획득한 선수 -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보전이 필요한 선수 - 기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의 우수선수	200,000 ~ 500,000